환자기본법안 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50

발의연월일: 2024. 12. 3.

발 의 자 : 남인순・조 국・이수진

오세희・김 윤・김남근

송옥주 · 정동영 · 민형배

허종식 • 박홍근 • 조정식

윤후덕 • 박희승 • 김남희

박주민 • 김선민 • 백혜련

서영석 · 강선우 · 서미화

전진숙 의원(22인)

제안이유

최근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「의료법」 등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에서 여전히 환자는 보건의료의 주체가 아닌 진료의 객체 또는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 으로 인식되고 있음.

메르스·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,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료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환자가 피해를 입 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.

현행 법률에는 환자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

부재한 실정이며, 현행 「환자안전법」은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, 환자가 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 역시 미비한 상황임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의 건강 보호,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, 환자 또는 환자가 조직한 환자단체가 환자정책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가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 행하도록 하고,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8조 및 제9조).
- 다.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환자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 표하여야 하고,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정책의 수립·시행 및 지

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여야 함(안 제11조 및 제13조).

- 라. 환자의 건강 보호,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·조정하고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(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).
- 마.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함(안 제18조).
- 바.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건강 보호, 투병 및 권익 증진과 관련 지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1조).

환자기본법안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가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환자"란 진찰, 검사, 의약품·치료재료·의료기기의 지급, 처치, 수술 및 그 밖의 치료, 예방, 재활, 이송, 호스피스, 연명의료 등 보건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 다.
 - 2. "환자단체"란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 제19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.
 - 3. "투병"이란 환자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, 적절한 관리 또는 생명 연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환자의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

- 의 책무를 진다.
- 1.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
- 2.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
- 3.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
- 4. 환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건강 보호, 투병 및 권익 증진과 관련한 정책(이하 "환자정책"이라 한다)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과정에 환자의 참여를 보장하거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국제 기여 및 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4조(환자의 날) ① 국가는 환자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의 날을 정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·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환자의 건강 보호,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환자의 권리와 의무

제6조(환자의 권리) 환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
- 1. 자신의 건강 보호,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받을 권리
- 2. 성별·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
- 3. 자신의 질병 상태, 치료 방법, 부작용, 진료 비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는 권리
- 4. 자신이 제공받는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
- 5. 자신의 건강 상태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기록의 사본을 요청하는 등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6. 자신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보호할 권리 및 제3자에 대한 제공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
- 7. 투병과 관련된 신체상,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
- 8. 의료기관 또는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
- 9. 부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에 대하여 신속·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
- 10. 건강 보호, 투병 및 권익 증진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
- 11. 환자의 건강 및 권익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

책 등에 의견을 제안할 권리

- 12. 환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
- 제7조(환자의 의무) ①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의료인(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3조제3호의 보건의료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정확히 알리고 보건의료인의 전문성을 존중하여야 한다.
 - ② 환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.
 - ③ 환자는 폭언, 폭행, 협박 등으로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행위를 방해하지 아니한다.
 - ④ 환자는 건강 보호, 투병 및 권익 증진과 무관하게 과도하거나 불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다.

제3장 환자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

제8조(환자정책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와 협의하여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 여야 한다.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환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- 2. 환자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
- 3.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
- 4. 환자정책에 관한 법적 · 제도적 개선사항
- 5. 환자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환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기본계획은 제14조에 따른 환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9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시·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·평가하고, 그 결과를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한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·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, 추진실적의 분석 ·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시행의 협조)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·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자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기관·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

- 할 수 있으며, 요청받은 관련 기관·법인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,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환자정책영향평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관련 정책이 환자의 건강 보호, 투병 및 권익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·평가(이하"환자정책영향평가"라 한다)하고, 그 결과를 환자 관련 정책의 수립·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.
 - ② 환자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,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환자정책연구사업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정책의 수립·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(이하 "환자정책연 구사업"이라 한다)을 수행하여야 한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·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.
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자정책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4조(환자정책위원회의 설치) 환자의 건강 보호, 투병 및 권익 증진 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·조정하고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

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제15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.
 -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제21조에 따른 환자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.
 - 1. 환자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 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
 - 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자
 -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 -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둔다.
 -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 -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
 - 3. 직무 태만, 품위 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

우

-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두고, 그 조직·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(위원회의 기능 등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·조 정하고 심의·의결한다.
 - 1. 기본계획의 수립ㆍ평가와 그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
 - 2. 환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
 - 3. 환자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
 - 4. 환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· 권고 등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위원장이 환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 - ② 위원회는 환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령·고시·예규·조례 등(이하 "법령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 -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법령등의 개선을 권고하기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 -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- ⑥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와 분 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①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,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(의견청취 등) ① 위원회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자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, 환자·환자단체 또는 보건의료인·보건의료인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수 있다.
 - ② 위원회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 관계 기관·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기관·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18조(환자·환자단체의 참여 확대)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하여 토론, 건의, 정책제안 등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의, 정책제안 등의 의사를 검토하여 법령등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장 환자단체

제19조(환자단체) ① 환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환자의 투병 관련 상담 교육
- 2. 환자의 불만, 피해에 대한 상담 및 관계 기관 단체 연계
- 3. 환자정책에 대한 조사 · 분석
- 4. 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개선방안 조사 · 연구
-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환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.
- 1. 환자의 건강 보호. 투병 및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할 것
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출 것
-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환자단체가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 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자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동록을 취소하여 야 한다.
-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자단체가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보완을 명할 수 있고,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- ⑥ 환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20조(환자단체의 보호·육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건강 보호, 투병 및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환자단체를 보호·육성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자단체의 사업·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5장 환자통합지원센터

- 제21조(환자통합지원센터 설치·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건강 보호, 투병 및 권익 증진 관련 지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한다.
 - ② 환자통합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한다.
 - ③ 환자통합지원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환자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2조(정관) 환자통합지원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- 1. 목적
- 2. 명칭
- 3.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
- 4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- 5.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6. 업무에 관한 사랑
- 7.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- 8. 공고에 관한 사항
- 9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10.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·폐지에 관한 사항 제23조(업무) 환자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 - 1. 환자의 투병 및 권익 관련 상담과 개별 환자단체 및 관련 기관· 단체 연계
 - 2. 개별 환자단체 역량 강화 및 지원
 - 3. 환자의 건강 보호,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
 - 4. 환자의 건강 보호,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·연구
 - 5. 환자의 건강 보호, 투병 및 권익 증진 관련 정책 개발
 - 6. 환자정책연구사업 지원
 - 7. 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
 - 8. 그 밖에 환자의 건강 보호, 투병 및 권익 증진과 관련하여 보건

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제24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이 법에 따른 환자통합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환자통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.

제6장 보칙

- 제25조(비용의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 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·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6조(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환자정책 관련 전문 기관·단 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27조(포상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 문제 해결이나 정책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환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·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.
- 제28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 - 1.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환자정책위원회, 실무위원회, 분야 별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
 - 2. 제21조에 따른 환자통합지원센터의 임직원
- 3. 제2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·단체의 임직원 제29조(과태료)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환자통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